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·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 정원 한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,

위원회 의결서 검토 등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2명(4급 1명, 5급 1명)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호, 2020. 1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, 신설되는 법무담당관의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 중 “기획재정담당관·혁신행정담당관·국제교류담당관”을 “기획재정담당관·혁신행정담당관·법무담당관·국제교류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

1.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
2.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
3. 위원회 각 과장·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,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
4.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
5.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
6. 법령해석 및 질의·회신 총괄

7. 법령안의 협의 총괄
8. 소송업무의 총괄·수행
9.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
10. 국무회의·차관회의 안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
11.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

제7조제1항 중 “나등급으로 하고,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”을 “나등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충민원심의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고충민원심의관은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나등급으로 하고,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”을 “나등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

심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행정심판심의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“센터장과 민원상담심의관은 각각”을 “센터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원상담심의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민원상담심의관은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(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.

제10조제1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 한다.

별표 1 총계 “471”을 “47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63”을 “465”로 하며,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9”를 “10”으로 하고, 검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통계사무관·부감사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시설사무관·임업사무

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150”을 “151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총계 “476”을 “47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68”을 “470”으로 하며,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9”를 “10”으로 하고, 검찰사무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통계사무관·부감사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시설사무관·임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150”을 “15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(생략)	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<u>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· 국제교류담당관</u> 및 <u>민간협력담당관</u> 각 1명을 두되,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· 법무담당관 · 국제교류담당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④ ----- ----- -----.
1. ~ 20. (생략)	1. ~ 20. (현행과 같음)
21. <u>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22. <u>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</u>	<삭 제>
23. <u>법령해석 및 질의 · 회신 총괄</u>	<삭 제>
24. <u>법령안의 협의 총괄</u>	<삭 제>
25. <u>소송업무의 총괄 · 수행</u>	<삭 제>
26. ~ 29. (생략)	26. ~ 29. (현행과 같음)
30. <u>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31. <u>국무회의 · 차관회의 안건검</u>	<삭 제>

토 등에 관한 사항

32.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
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

33. (생 략)

<신 설>

<삭 제>

33. (현행과 같음)

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
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
다.

1.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
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
등에 대한 법령검토

2.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
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
대한 법령검토

3. 위원회 각 과장·담당관이
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, 그 밖
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
하여 지시하는 사항

4.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
에 관한 사항

5.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

6. 법령해석 및 질의·회신 총
괄

7. 법령안의 협의 총괄

8. 소송업무의 총괄·수행

9.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
사항

⑤·⑥ (생략)

제7조(고충처리국) ① 고충처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,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10. 국무회의·차관회의 안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

11.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

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
제7조(고충처리국) ① -----

----- 나등급 -----

-----.

②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충민원심의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고충민원심의관은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.

② ~ ⑬ (생략)

제8조(행정심판국) ① 행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,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⑨ (생략)

제9조의2(정부합동민원센터) ① 정부합동민원센터(이하 “합동민원센터”라 한다)의 센터장과 민원상담심의관은 각각 고위공

④ ~ ⑮ (현행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)

제8조(행정심판국) ① -----

----- 나등급 -----

-----.

②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행정심판심의관으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.

④ ~ ⑪ (현행 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)

제9조의2(정부합동민원센터) ① -----

----- 센터장은 -----

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
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⑧ (생 략)

제10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) ①위원회(「행정기관의
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
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
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
다)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
원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행
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

-----.

②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
기관 직제」 제14조의3제1항에
따라 센터장 밑에 두는 보좌기
관은 민원상담심의관으로 하며,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
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
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③ 민원상담심의관은 「국민권
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
제1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
의 사항(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
제외한다)에 관하여 센터장
을 보좌한다.

④ ~ ⑩ (현행 제2항부터 제8
항까지와 같음)

제10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) ① -----

-----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계	.		.		.		
			<u>471</u>		<u>473</u>	+2	
일반직 계	.		.		.		
	.		.		.		
			<u>463</u>		<u>465</u>	+2	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.		.		.		
	.		.		.		
			<u>9</u>		<u>10</u>	+1	
	.		.		.		
	.		.		.		
검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사회 복지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부감 사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 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		<u>150</u>		<u>151</u>	+1	
	.		.		.		

--	--	--	--	--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476	478	+2
일반직 계	468	470	+2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9	10	+1
검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사회 복지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부감 사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 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150	151	+1

